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김 현 경*

I. 서론	
II.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의 의의	
1. 법체계 정합성의 의의	IV. 법체계 정합성 확보방안
2.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입법 기술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방향 준수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상과 법체계 정합성	2. 개별 입법의 지양
	3. 영역별 차이 고려, 변화의 합리적 수용
III. 영역별 체계부정합 현황	V. 결론
1. 금융 영역	
2. 의료 영역	
3. 정보통신 영역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공·민간 전체를 완전히 포괄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은 금융, 의료, 교육, 근로, 정보통신 등 각 영역별로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수 십여 개가 넘는다. 이러한 법규들이 계획적 설계 하에 종합적·단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법률 상호간에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으로 금융, 의료, 정보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법령체계의 부정합성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개별법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보가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핵심내용이 개별 영역별 개인정보 법령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제재규정의 정비, 중복 제도의 일원화, 핵심용어 등의 통일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극히 예외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신규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각종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의 합리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I. 서론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그간 부문별·영역별로 산재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공공·민간 전체를 완전히 포괄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역별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별도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들이 계획적 설계 하에 종합적·단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적 수요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법률 상호간에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중첩 적용됨으로써 정보주체의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과도한 중첩적 규제로 개인정보처리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 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등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여타 법률과 상호 어떠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각 개별법의 소관부처가 다른 만큼 동일한 개념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규제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¹⁾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 적용의 혼란이 존재하고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가 정치하지 못하고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

1)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를 한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한국정보화진흥원·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2014.12, 24면)는 “본 안내서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이라고 기술함으로써(27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

법」과 관련 개별법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가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실증적 연구를 위해 구체적으로 금융, 의료, 정보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법령체계의 부정합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의 의의

1. 법체계 정합성의 의의

법의 ‘정합성’이라 함은 모순 없이 일관성과 흠결 없는 완전성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²⁾ 관련법 간에 논리적 통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법한 법령이 존재하며, 동일 또는 유사사안에 관련된 법령들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고, 국가의 지도원리인 헌법원리에 위배됨이 없는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상태의 구현이 가능한 법적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³⁾ 즉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 혼란, 불일치 그리고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법체계 정합성 구현을 위해 법의 적용 및 효력에 있어서 헌법-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으로 이어지는 상·하위법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도록 수직적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직적으로 동위에 있는 법령간의 모순이나 충돌, 흠결이 없도록 수평적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간 동일 내용에

2) 오세혁, “규범충돌 및 그 해소에 관한 연구:규범체계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49면.

3) 양석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법학연구 제33집(2009.2.25.), 한국법학회, 434~435면.

4) 일각에서는 유사하게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 또는 체계적합성(Systemgemäßheit)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 또는 체계적합성(Systemgemäßheit)이란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890면, 현재 1995. 7.21. 선고 94헌마136 결정). 즉 어떠한 법령이 전체 법질서나 다른 법령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령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법규범의 구조, 체계 및 내용이 모순·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영도,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70-71면 참조; 홍완식,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12, 469면).

대하여는 동일한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입법내용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며(통일성), 그 법령의 표현방법, 입법의도, 용어정의 등에 있어서 명확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명확성), 또한 평균인의 법의식을 고려하여 법령의 수범자가 쉽게 수긍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실효성), 법이 흠결 없이 사회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현실적 타당성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현실적응성).

이처럼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 그 내용이 전체 법체계 내에서 상호 모순·충돌·공백이 없도록 법체계정합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입법기술

가. ‘기본법’과 ‘개별법’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법이라는 용어는 법제실무에 있어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실생활에 있어서 광범위한 역할을 발휘하는 개별법령 또는 일단의 법규를 의미한다(예: 헌법·민법·상법·형법·소송법·행정법을 기본육법이라 정의하는 것). 둘째, 동일 위계에 속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들 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예: 조세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 셋째, 어떤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한다.⁵⁾

이 중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현장으로서의 이념규정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열거하는 기본법을 두는 법령체계이다. 즉, 일정한 산업분야의 진흥, 청소년과 같이 일정한 국민계층의 육성 및 보호 등의 정책수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본법이 당해 정책분야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법령체계이다(예: 국가정보화기본법, 청소년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 유형의 장점은 일정한 분야의 정책에 관한 수단을 뒷받침하는 법령에 대한 총괄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당해 정책분야에 대한 모든 부서의 정책 및 법령의 체계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5) 이하의 논의는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참조.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제시된 방향 및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당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체계화를 추구할 수 있다. 단기적 사안이 아닌 장기적·종합적 사안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입법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할 경우 기본법에서 정책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어 정책추진의 융통성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 규정보다는 기본이념과 원칙적 규범의 규정 중심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한 무계획적 입법으로 인한 법령 수의 증대, 법제의 고도화·복잡화 등에 수반되는 법률 간의 모순·충돌 발생 등에 대응하여 제도·정책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항만을 최대한 완벽하게 규정한다고 해도 현실의 다양성과 사회 변화속도, 법률해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포괄적 원칙적 규범을 통해 입법공백을 치유할 수 있다. 새로운 이념이나 제도의 형성·정착을 도모하려는 경우 기본법제정으로 사회의 이해와 인식 및 의식개혁 추진을 통해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기능도 하게 된다. 반면, 이 유형의 단점은 일정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다양한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 및 의견조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기본법의 활용에 대해서는, 진정한 법이란 사회적으로 규범으로서 효율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구적 성격을 띠게 되지만, 자칫 기본법은 비효율적 법으로서 법의 보호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는 단지 신기루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사실적 효율성과는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 결정의 작용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기본법에 규정된 정책방향규정이나 원칙규정 등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사실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조항의 효력은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중요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관념을 확인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당해 법률의 정당화 및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규범적 내용을 제시한다.⁶⁾

6) 이러한 비판은 규범체계가 일도양단식으로 적용되는 규칙뿐만 아니라 형량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도 구성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본법에 주로 규정될 원칙규범은 입법(의회입법과 행정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며, 사법기관에게는 해석의 지침을 제공한다(예컨대, 불법행위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책무규정은 위법성과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상기해보라).

나. ‘일반법’과 ‘특별법’

입법기술적상 기존법리의 유추적용이 가능하고 다만, 세부·기술적 사항만이 다를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일반법의 보완이 더 나은 방식이다. 반면에, 기존법리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입법이 요청된다. 예컨대, 형법상의 개념보완을 통한 사이버범죄의 규율이 가능하다면(절도죄의 물건을 생각해 보라),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전자거래가 그 성립시기, 방식, 목적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민법상 법리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입법이 요청된다(전자거래기본법을 생각해 보라).

원론적 수준의 검토이지만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문제를 포섭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가는 새로운 법 현상의 크기와 정도 그리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법적용의 기본원리가 동일한지 여부 또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 두 법 현상이 다른 기본원리와 관점을 가지고 규율되어야 한다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법 원리를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공법’, ‘사법’ 그리고 ‘중간법’

규제입법의 경우 규제수단의 선택이 요청된다. 즉, 사법적 수단(자율규제 내지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해결), 형법적 수단(형벌), 행정법적 수단(각종 행정제재) 중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현상은 공사법 이분론에 따라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어떤 일탈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의 기초인 민사법적 불법과 형사불법의 중간 영역, 즉 중간법(middle law)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⁷⁾ 민법적 제재(손해배상) 내지 조정법(보험법)적 제재(보험료 할증) 보다는 더 강한, 즉 징벌적(punitive) 성격의 제재가 필요하지만, 형법적 제재(형벌)보다는 약한 제재가 적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법은 행정법적 불법의 성격도 띠며, 이 경우 여기서 말하는 중간법은 민법과 형법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포함한 삼각폭지의 중간지대를 관할하는 법이다. 미국의 민사제재금(civil money penalties) 및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가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중간법의 성장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법정책상 최적의 법질서에 대한 기획을 놓치게 되고, 그 한에서 헌법은 경제질서 형성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거나 적어도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정보통신법의 기술법적 성격과 강

7) 이하의 논의는 이상돈,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2005), 55~56, 168쪽 참조.

한 진흥법 내지 촉진법적 성향에 비추어 이른바 중간법(middle law)의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라. ‘경성법’과 ‘연성법’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처방의 예측이나 법적 규율효과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의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모델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조할만한 입법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행동규제의 수단으로서의 법, 즉 규칙으로서의 법보다는 원칙 내지 지침으로서의 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 앞서 검토한 기본법 또한 일정한 경우 연성법(soft law)으로 작동되는 수도 있다.⁸⁾ 그러한 환경에서 대두되는 권익침해문제 아울러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 발전방향이나 영향 리스크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선블리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나 규율을 가함으로써 자칫 기술발전이나 시장개척에 예기치 못한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참 발전도에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법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국제동향이나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의 시장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단은 지침(guideline)이나 권고 등을 통한 일종의 연성법적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자칫 법적 안정성이 해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마. ‘실체법’과 ‘절차법’

정부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각종 권익 침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제도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이나 행정비용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그 방식선택은 정책추진의 경중 내지 비용-효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사전협의, 자체보고, 전문가활용, 위원회구성 등의 폭넓은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정보기술 법령에서 실체법적 고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법에 대한 관

8) 이하의 논의는 홍준형,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11~213면 참조.

심이다. 급속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만큼, 관련법제도 빠른 속도로 제·개정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분쟁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체법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체법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법 역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⁹⁾ 다시 말해, 정보화 분쟁의 기술의존성 내지 전문성 등에 비추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기존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예컨대, 소송)이 원용 가능한 기술적 특수사항을 입법하거나, 그로 부족할 경우 각종 위원회에 의한 전문적, 독립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상과 법체계 정합성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문제는 단연코 정보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법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정보기술의 기술적인 문제나 그것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규제, 즉 기능적 요소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고 그 바탕이 되는 이념이나 원칙을 간과하기 쉽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법체계의 부정합적 요소들을 방치할 경우 산업발전이나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복지차원에서조차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법체계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영역을 하나의 법역(法域)이라고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은 응당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분야의 총괄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제도·정책의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개인정보 영역의 입법공백을 치유하는 기능 또한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등 다수의 개별법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9) 이하의 논의는 길준규, “정보통신법상의 분쟁해결제도”, 법과 정책연구, 제5집, 1021면 이하 참조.

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과 기본원칙을 수렴,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일반법’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특별법상의 규정이 우선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분야에 있어서 지도법, 지침법으로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그 특별한 규정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배될 경우 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 각 영역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가능하게 하며, 정책목표 내지 원칙에 대한 통일적 기준의 제시를 통해 법체계 부정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의 적용범위 자체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며 사법적 수단(자유규제 내지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해결), 형법적 수단(형벌), 행정법적 수단(각종 행정제재)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공법 혹은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종의 중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중간법적 성격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개인정보 분쟁에 있어서도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는 고정된 시장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끊임없이 혁신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시장을 규율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 규제수단으로 이른바 중간법(현행법상은 과징금제도 내지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들)의 활용이 더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가 ‘경성법’임에도 불구하고 ‘연성법’이 불가피하게 생성될 수 없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이러한 행자부장관이 마련한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제2항)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각각 의료, 교육, 노동, 위치정보 영역에 있어서 각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영역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성법 즉 지침은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위반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실체법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구제절차, 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대표적인 절차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의 기술의존성 내지 전문성 등에 비추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

나. 개인정보 법역(法域)의 체계정합성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전체 법체계 내에서 상호 모순이 없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는 법체계의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법체계의 통일성 및 무모순성의 실현은 최초의 입법작용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법적용과정과 함께 법령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점진적으로 추구되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의 법체계 정합성 유지 의무는 최초의 입법작용인 법 제정 당시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는 법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해당법령의 체계정합성의 부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은 금융, 의료, 교육, 근로, 정보통신 등 각 영역별로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수 십여 개가 넘는다. 이러한 법령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법의 적용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에 이미 규율된 사항도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보완된 내용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개인정보’의 규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법규상으로 제시되지 않은 바, 개인정보 법역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법의 개인정보 규

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체계부정합의 유형은 첫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모순·상충되는 경우, 둘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셋째, 입법공백의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법·일반법적 성격을 근간으로 금융, 의료, 정보통신 영역에서 법체계부정합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 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Ⅲ. 영역별 체계부정합 현황

1. 금융 영역

가. 상충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등 금융 계약 체결은 일반 민법상 기준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연령은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민법」 제4조 및 5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만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따라서 부모 등의 친권자가 자녀(만 14세~ 18세)를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하게 된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면 계약 등 법률행위에 수반되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취지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만 14세 이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도 일응 가능하다. 그러나 1) 「개인정보 보호법」은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분리하여 후자를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참조), 2)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독자적인 목적 하에 제정된 법률로서 민법에 따른 법률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의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본

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법」 제5조는 만 19세 미만의 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으로서 양 자는 규율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과 「민법」 제5조는 각자의 입법 목적을 지닌 법률 조항으로 독립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 하에서 본다면 부모 등의 친권자가 자녀(만 14세에서 만 19세)를 위하여 보험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의 반대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 본인에 해당하는 해당 자녀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대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여 대리에 친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대리할 수는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작성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관계를 더 복잡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입법취지가 모두 구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법 적용의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연령 규정의 특칙을 인정하는 규정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 중복

2015년 3월 개정된 「신용정보법(법률 제13216호, 2015.3.11., 일부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일부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실제 각종 조치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게는 과도한 중첩적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보험사는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 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며, 그 도입취지 또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정한다는 면에서 대동소이하다. 실무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함으로써 규범의 준수를 피하겠지만 양자는 엄격히 수범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중복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간주하는 규정의 도입을 통해 양법의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1>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구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법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수행 업무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기타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p>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p>	<p>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p>
---	--

또한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제31조에서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0조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입법의도와 취지가 동일 한 바 이 역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수립, 공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도입의 통해 수범자의 업무부담을 감경시켜 줄 필요가 있다.

<표2> ‘신용정보활용체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비교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법」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공시 공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p>관리·보호인이나 같은 항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p> <p>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p>	<p>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p> <p>8.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p>
<p>공시 방법</p>	<p>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p> <p>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p>	<p>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p> <p>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p>기타</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음

그밖에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누설통지’제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와 그 도입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다. 양자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부분(금융위원회에 신고

등)만 별도로 규정하되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 제도를 연계시키거나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 의료 영역

가. 상충·불균형

「의료법」에 의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제1항).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법령의 허용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3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를 하는 것이다. 즉 '처리'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것은 그 행위 태양에 있어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다르다. 당연히 '누출·변조 또는 훼손'의 행위태양이 더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있어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형량이 더 높은 것은 그 행위의 위법성 또는 비난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바 법체계 불균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의료법」 제88조, 친고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1조제1호). 오히려 의료법상의 환자기록은 대부분 민감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반한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벌규정은 일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규정 위반보다 더 약하다. 이 역시 법체계 정합성 관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공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처방전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정보 등을 정보주체의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의료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법령에 의해 수집하는 이러한 진료목적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해(「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¹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의절차가 불필요하다.¹¹⁾ 그러나 진료의 예약,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을 위한 연락처 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사전동의 면제에 대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진료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¹²⁾ 견해에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다.

의료서비스는 대체로 공익성이 큰 서비스로 그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는 의료서비스의 불편 및 지연을 초래하는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대부분 질병과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오히려 그 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과정에서 기술적·관리적 안전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약정원 사건¹³⁾에서

1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2) 2012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의료기관)"에 의하면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은 진료목적으로 보며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2페이지) 이는 명백히 법령에 규정이 없는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13)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인 약학정보원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맹 약국에 경영관리

도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그 정보가 유출 될 경우 그 여파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의료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예방접종기록 등에 대한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보관과 관련하여 처방전 2년, 진료기록부 10년 등 그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지만,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과 같이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지, 파기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의료법」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제1항). 즉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에 관한 기록의 경우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진료에 관한 기록이 “불필요하게 된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는 입법의 불비이다. ‘진료에 관한 기록’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¹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와 같이 보존연한에 대하여 최단기간만 보장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료정보의 영구보관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게만 유리한 규정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의료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에 따라 각각 최단과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

다.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의 삭제

프로그램 PM2000을 배부해 약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 43억3593만건을 약국측에 설명하지 않고 환자들의 동의없이 수집·저장·보유한 후 판매한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 등 관련자 24명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특히 이들은 16억원을 받고 IMS사에 수집한 조제정보들을 판매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IMS 헬스코리아는 매입한 자료를 해외 본사에 임의 제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해외로 유출한 것은 물론, 이 자료를 통계처리해 제약사들에게 다시 판매해 총 7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667, 현대건강신문, 2015.11.9. 확인)

14) 신용정보의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보관 후 삭제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신용정보 보호법 제 조).

15)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2008. 3., 51~52면.

요구할 수 있다.¹⁶⁾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권리인 정보삭제권을 법률에서 직접 적용한 것이다. 개인의료정보도 이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료기관은 삭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료정보의 특성상 공익적 활용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무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삭제 및 파기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분류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1)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의로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를 삭제해야할 것인지 여부, 3) 정보주체는 본인의 정보 중에서 일부만 삭제가 가능한지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¹⁸⁾

3. 정보통신 영역

가. 상충·불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5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비범죄화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조항으로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을 뿐인 경우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면 될 뿐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가벌성이 낮다는 입법적 판단이 전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반면 동일한 행위위반에 대하여, 즉 동의 없는 수집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과 5천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16)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17) 유희진,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법적·의학적 쟁문제,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2011.12.15.), 34면.

18) 이한주,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2014, 190면.

19) 이인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5집, 2014, 295면.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호).

대부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 온라인 또는 정보통신상의 처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정보처리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치정보법」의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이 역시 앞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의 위반 제재에 비추어 볼 때 그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1호). 그러나 단순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제75조제2항 제6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제76조제1항제3호). 그러나 「위치정보법」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즉 단순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위치정보법」 제41조 제4호). 특히 여기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대상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물건 또는 개인의 단순한 ‘위치정보’이므로 이러한 형벌규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비추어 볼 때 그 형평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파기규정 위반에 대하여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4호) 부과하고 있으나, 「위치정보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1조제1호). 이 또한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불균형으로 그 균형점을 맞추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나. 중복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복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 수범자에 있

어서도 중복된다. 개인정보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극히 예외적인 몇몇 규정을 제외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극히 예외적인 「정보통신망법」상의 특수한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사유로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제23조의2)’가 추가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경우’가 규정된 것 등이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특별 사유(사업 폐업, 불이용 시 파기)(제29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 추가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용내역의 통지의무’(제30조의2) 등이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포섭될 수 있다.

<표3>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비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비고
수집·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 - 계약의 이행, 요금정산 - 법률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동의에 의한 수집 시 고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개인정보 수집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최소한 수집 원칙 - 불필요한 정보 수집 거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최소한 수집 원칙 - 불필요한 정보 수집 거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있다는 사실 고지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수집금지 - 예외 : 동의, 법령의 요구 또는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수집금지 - 예외 : 동의,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 처리금지 - 예외적으로 허용 ①법령상 요구·허용 ②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 수집·이용 금지 - 예외적 허용 ① 법령상 허용 ②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③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특별 규정 존재
제3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 -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 -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특별 규정 존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보호 인증 - 개인정보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의 경과 - 처리 목적 달성 - 기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 경과 - 수집·이용목적달성 - 사업의 폐업 - 1년 동안 미이용자 정보 	「정보통신망법」상 특별 규정 존재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규정 내용 대동소이 신고기관 다름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접근 통제 및 권한 제한 조치 -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보관시설 마련,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청구권 - 정정삭제청구권 - 처리정지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제공·정정 요구권 -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 - <u>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u> 	「정보통신망법」상 특별 규정 존재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손해배상 청구(300만원 이하)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법정손해배상 청구(300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위치정보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된다. 위치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득한 ‘위치정보사업자’이다. 이용 역시 이러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그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 그 이용내역을 건건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i)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ii)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iii)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경우 iii)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위치정보법」상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긴급요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1조제1항)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기타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그 수집 및 이용에 있어서 그 규제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치정보법」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가능한가? 양법 모두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를 충돌규정으로 본다면 그리고 양법이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라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치정보법」만이 적용되게 된다. 이처럼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법에 의해 따로 규율함으로써 법적용상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IV. 법체계 정합성 확보방안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방향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법역의 기본법이며 일반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별법상의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본법이 우선 제정된 후 이를 실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개별법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미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본법이자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법을 존치시킨 결과 규범간의 충돌,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의료, 금융, 정보통신 영역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법령이 같은 대상자에 관한 사항임에도 세부 내용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본인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법 적용, 행정부의 법 집행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법역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핵심내용이 개별 영역별 개인정보 법령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제재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형벌·행정벌 등을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행위태양이 아닌 한 즉 동일·유사한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재수위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제재수위에 있어서 법률 간의 모순을 제거하고 형벌규정의 명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형벌이나 행정벌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며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따라서 국민의 행동양식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가장 민감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정당성·타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규정들과 동법상의 벌칙규정들 간의 체계적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재규정을 기준과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에서의 행위태양의 차이, 불법의 크기가 다름이 명확한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그 제재수준을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복제도의 일원화와 핵심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제도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도,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도는 모두 동일·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활용체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도 역시 대동소이하다.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누설통지' 제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제도와 그 제도취지 및 내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각의 법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률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

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법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도를 인용하도록 개선하여 제도의 통일성과 일관성, 체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의 처리·개인정보의 취급’, ‘유출·누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념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동일한 개념일 경우 별도의 개념정의 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여 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취지가 몰각됨이 없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핵심제도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입법과정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용된다는 예외에 의해서 다수의 법령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그 수집 및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전에 마련된 개별 법령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처리 규정이 그대로 운영됨으로서 이 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규정마련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에 대한 예외를 개별법이 수용해 가는 것으로 기본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법령의 재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별 입법의 지양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것과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내용이 없을 때에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서 혹은 조세·교육·의료·복지 등의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늘어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많이 두면 둘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존재의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명목적인 지위만 지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²⁰⁾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개별법들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수범자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법령이 적용될지, 어느 기관의 규제와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게 될지, 어떤 절차에 의해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로서도 어떤 경우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명백히 예외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한 신규입법의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일환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터넷이 기본 인프라로 정착된 현실을 감안할 때, 즉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특수하게 규율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중복된다. 몇 안 되는 특별한 규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서 개별 규정의 마련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입법기술상의 문제이지 「정보통신망법」에 반드시 별도로 규정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규정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정의와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각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중복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수집규정(제18조, 제19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²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파기, 정보주체의 동의철회권, 열람·고지·정정요구권 등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위치정보

20)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10, 37면

21)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동의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제2항) 그 내용은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이다. 「위치정보법」상 약관기재사항은 이 외에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추가하고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 시켜놓은 것에 불과하다.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위치정보법」 제26조)’ 등 극히 몇 개의 특칙을 제외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국민, 법 적용·집행기관 등 수범자의 편의와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안에서 통합, 일원화 되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영역별 차이 고려, 변화의 합리적 수용

가. 기본원칙

규제의 근본 이유는 ‘공익의 추구’이다. 규제는 공익이라는 규범적 계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다만 이러한 공익적 계기가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이익집단활동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나 이는 역관계인 규제완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익추구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사익의 추구는 그것이 규제의 주된 효과라기보다는 반사적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공익의 주된 본질은 “공공의 이익, 즉 공익”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²²⁾ 이러한 공익 추구라는 근본목표를 향한 규제원리는 여럿 있을 수 있으나 규제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대상자에 대한 차별 금지의 원칙, 어떻게 집행될지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는 집행예측성 원칙 등이 담보되어야 그러한 집행이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준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규제형평성²³⁾의 문제이다. 형평성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가 동일한 범주의 대상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과 함께 동일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22) 김현경,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제3호(2014.09), 490면.

23) 형평성은 그 어원에서 동등(equality), 일치(conformity), 균형(symmetry), 공평(fairness)을 의미하는 라틴어 aequitas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어원의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규칙들의 기계적인 적용과는 다른 공평성에 따른 정의(justice)”를 의미한다(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R. Dworkin의 자원평등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2007, 1-21면.

는 차등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이다.²⁴⁾

개인정보 법령의 대부분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어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내용이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차이를 고려하며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기본원칙이 각각의 영역별 개인정보 법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의료영역

의료 영역의 ‘개인의료정보’는 의사와 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환경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건강정보, 생활습성, 신체적 특징 등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민감한 정보였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각종 디지털헬스케어 앱 등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은 ‘개인의료정보’ 규제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정보의 생성이 주로 의사와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각종 디지털헬스케어기기를 통해 생성된 의료정보가 추가되면서 정보의 민감성은 희석된다. 기존의 진료기록의 역할은 의사와 환자간의 치료 활용이 주된 기능이었던 반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예방, 예측, 새로운 의료정보의 생성 등 그 역할·기능이 다변화 되고 있다. 또한 사후 분쟁의 대비 또는 의료인들 간의 협업 차원에서 의료기관에만 보관되어 있던 진료기록들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저장·보관됨으로서 각종 플랫폼을 통한 활용이 용이해 졌다. 이처럼 규제환경은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기존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져 있었던 규제는 ‘공익’이라는 ‘원칙’의 준수가 담보되는 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의 합리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수정의 기본적 방향은 당연히 정보주체에게 유익한 신규서비스의 수용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허용,²⁵⁾ 전자의무기록의 합리적 활용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이 개인의 질병치료적 사용에 제한되었다면, 그 규율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적 관점에

24) 임의영, 행정이념의 이해. 이민호·윤수재·채종현(편).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한국행정연구원, 공공성과 행정이념 연구총서(2). 2010.

2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5.11.17.)되어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허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나, 규정의 불명확성, 과도한 설비부담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서 규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료정보의 활용가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²⁶⁾ 이제는 건강연구·보건정책적 차원에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건정책·건강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규율되어야 한다.

다. 금융영역

금융영역의 경우 빅데이터 등 데이터분석기술로 인해 서비스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 중 하나이다.²⁷⁾ 이미 해외 금융사들은 상품개발·언더라이팅·마케팅뿐만 아니라 위험분석과 보상처리 및 보험사기 방지에도 빅데이터를 심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인슈어더박스(InsuretheBox)와 미국의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등은 자동차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습관, 운행패턴 등에 따른 연계상품을 개발했다. 특히 InsuretheBox의 경우 급출발·급제동·교통혼잡 지역·시간대 회피 정보 등 월간 약 8000만 건의 운행정보를 수집했다. 보험가입 전 약 1개월간 운행정보를 기록한 후 보험료를 책정하고, 가입 후에도 안전운전 정도에 따라 할인 등의 부가혜택을 제공한다.²⁸⁾

이러한 신규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의 기본원칙은 더 낮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서비스에 부합하는 규제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15년 3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고객)에게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만(제32조제1항) 활용할 수 있는 바,²⁹⁾ 실시간

26) 과거 데이터 분석기술이 요원한 시대에는 개인의료정보의 가치가 개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제한적 활용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헬스케어기기의 발달은 더 이상 개인의료정보가 개인적 진료와 관련된 활용대상으로 제한되지 않고 국민 건강, 질병 예방, 의학 연구에 있어서 더욱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의료(Health care)분야에서 연간 3,000억 달러(스페인 연간 의료비의 2배) 이상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전망한 바 있으며 빅데이터 도입, 활용이 매우 기대되는 영역의 하나로 의료분야를 꼽고 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06.

27) Gartner 는 빅데이터 관련 투자에 적극적인 산업으로 보험 산업이 포함되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artner Survey Reveals that 64% of Organizations have invested or plan to invest in BigData in 2013, Gartner, September 2013). PWC가 보험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대상자의 91%가 빅데이터가 향후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차별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90%는 보험사의 비즈니스모델 변화, 발전에 있어 빅데이터가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PWC, December 2013).

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920464>(2015.10.24 확인)

29)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에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고객 동의없이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2015.6.3. 보도자료). 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건별로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비스 운용 주체에게는 과중한 업무부담이며, 이용자 역시 매번 동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 이는 결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규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정보통신 영역

정보통신영역은 짧은 기술생애주기, 승자독식과 쓸림 현상(tipping phenomenon), 글로벌 유행성, 소비자 지향성 등이 맞물려 기술변화의 속도가 규제에 각별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정보기술은 본질적으로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변화관리 및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른 유출위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개인정보 사각지대의 해소, 국제적 수준의 규범 마련 등이 전제되었고 당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정 및 시행자체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만큼 법의 발전에 있어서 지속적 수정·보완은 매우 중요하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Internet of Thing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제하여서는 안 되며 활용을 통해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의 입법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철저한 사전 동의 규제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사후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공개된 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례로 「위치정보법」의 2005년 제정당시 환경은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을 규율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실제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나 물류회사가 주종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법은 오로지 프라이버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과 연계되지 않은 사물의 위치정보에 대하여도 수집 이용 제공에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였다.³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보다도 그 규제대상의 범위

그러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법률의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30)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제46호, 2014.6, 96-96쪽.

가 넓으며,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닌 위치정보’ 즉 ‘익명인의 위치정보’의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³¹⁾ 한편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대부분 사물의 이동정보(자동차, 헬스케어 제품, 기타 각종 휴대용 기기 등)는 이 법에 의한 위치정보에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물의 위치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매번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치정보법」의 단순위치정보 규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차원에서 규율된 것이며 제정 당시 IoT라는 기술적 진화를 예정한 것은 아니었다. 기술 환경 즉 규제환경이 변화하였다면 이러한 규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V. 결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미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본법이자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법을 존치시킨 결과 규범간의 충돌,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금융, 정보통신 영역 등에서 개인정보 법령이 같은 대상자에 관한 사항임에도 세부 내용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 각 영역 법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목표 내지 원칙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분야에 있어서 지도법 또는 지침법으로서 개별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그 특별한 규정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배될 경우 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현되도록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핵심내용이 개별 영역별 개인정보 법령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형벌·행정벌 등을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행위태양이 아닌 한 즉 동일·유사한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재수위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중복제

31)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37집 2012년 12월, 194쪽

도의 일원화, 핵심용어 등의 통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도 등 개별법에서 별도로 유사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극히 예외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신규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일환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과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정보기술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의 합리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보주체에게 유익한 신규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영역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허용, 전자의무기록의 합리적 활용의 확대가, 금융영역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의 합리적 동의와 제3자 제공의 허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영역에서는 엄격한 사전동의 보다는 정보주체의 사후통제권을 보장하고,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공개된 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6.02.14, 심사개시일 : 2016.03.02, 게재확정일 : 2016.03.16)



▶ 김 현 경

「개인정보 보호법」, 법체계 정합성, 의료·금융·정보통신 영역 개인 정보 법제, 법령의 충돌, 규제의 수정

【참 고 문 헌】

I. 단행본

- 박경수/이경현, 「사물인터넷 전쟁」, 동아엠앤비, 2015.
 이민영, 개인정보법제론, 개정증보판, jinhan M&B, 2007.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최윤섭, 「이미 시작된 미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201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11.

II. 논문

- 김경호,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원무관리 개선” 법과정책연구 제6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6.
 김민호·김일환,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46권, 2009.
 김민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2007.
 김선정,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손해보험 2003년 2월호, 손해보험협회, 2003.2
 김영태 외,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금융위원회, 2012.12
 김용영·신승수, “신뢰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 土地公法研究 第52輯,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김현경,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제3호, 2014.09.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第27卷 第3號, 2015.09.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3.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法學研究 第37輯, 2010.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37집, 전

- 북대학교, 2012.
- 배대현, ‘쟁결음으로 나선’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하는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및 관련법률 검토, IT와 법연구 제6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2.
- 백윤철,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5.
-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 이상직, ICT산업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과 과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자료집, 2015.4.
- 이인영,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적 문제”, 법학논총 제28집 제1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11.
- 이한주,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4.,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 이호용,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활용, 한양법학 제24권 제4집(통권 제44집) 2013.11.
-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제3권, 서울대학교, 2012.
- 전웅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 정경영,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 관련 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행정안전부, 2007.12.15.
- 정재욱·여유희,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효과 분석」, 금융연구, 제25권 제1호, 2011
- 조용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정보화정책 제12권 제2호, 2005.
- 조홍석, 위험사회에 있어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방안, 한양법학 제24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3. 11.
-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2013.
- 최민석, 하원규, 김수민. 2013. 만물지능인터넷 관점으로 본 초연결사회의 상황 진단 및 시나리오. IT 이슈 리포트 2013-12.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최운섭, “디지털 헬스케어와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2015.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제46호, 2014.6.

III. 외국문헌

Douglas Lichtman & William Landes, Indirec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 An Economic Perspective", 16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395, Spring 2003.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es and Policymakers, March 2012.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06.

Mart A. Lemley & R. Anthony Reese, Reducing 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Without Restricting Innovation, Stanford Law Review, May 2004.

Nicolas P. Terry, PROTECTING PATIENT PRIVACY IN THE AGE OF BIG DATA, Robert H. McKinney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3 - 04

Paul M. Schwartz & Daniel Solove, Reconcil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September 6, 2013). 102 California Law Review (2014 Forthcoming)

Paul M. Schwartz & Daniel Solove, The PII Problem: Privacy and a New Concep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86 N.Y.U. L.Rev. 1814 (2011)

Spiros Simiti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Informationsfreiheit als Verfassungsprinzipien, Thomas Kreuder(Hrsg.), Der orientierungslose Leviathan, 1992

Sharon Hoffman & Andy Podgurski, FINDING A CURE: THE CASE FOR REGULATION AND OVERSIGHT OF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ume 22, Number 1 Fall 2008

Abstract

Study on Consistenc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Legal Framework

- focusing on the finance·healthcare·ICT areas

Hyunkyung, Kim

Korea became a legal system that completely covers the entir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the implemen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law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is already more than about a hundred each area such as finance, health, education, employ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se laws were created individually, sporadically whenever there is a demand, not enacting under the comprehensive planning design, so resulting in the situation that does not ensur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laws. Based on this awareness issue, the paper specifically reveal the inconsistencies and conflict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cts on financial, healthcare and ICT areas, it was to derive improvements to resolve th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rengthened the position as general and basic La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a result it is to provide a way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so effective.

First, the key points that determine the basic di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lected consistently in the Privacy Acts of individual areas. As a concrete plan, readjustment of legal punishment, the unification of the redundant system, coherence of key legal terms should be made. Second, unless there are a very unusual provision requirements, the new legislation should be avoided and it is

desirable that regulation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and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e incorpor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ird,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reasonably 'modif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nd to meet the changing environment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Big Data, Cloud Computing, etc.



▶ Hyunkyung, Ki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sisten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on medical·healthcare·ICT areas. Conflicts between laws, Reasonable modifications of regulations